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8. 17 선고 2021가단4442 판결 [사해행위취소에의한가액배상금청구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현 성동영

변 론 종 결 2021. 6. 22.

판 결 선 고 2021. 8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03. 7. 14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3,213,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3,213,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(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)는 소외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737474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10. 11. 19. 'C는 원고에게 37,618,872원과 그 중 15,211,700원에 대하여 2010. 5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고 한다)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2010. 12. 21. 확정되었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2003. 7. 14. 사망한 고 E(이하 '고인'이라고 한다)의 소유였는데, 같은 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. 4. 17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, 이후 2019. 12. 25.자 매매를 원인으로 2020. 4. 9. 소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고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고인이 사망한 2003. 7. 14.경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2017. 4. 17.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, 이에 비추어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7. 4. 17.경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, 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나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. 피고의 항변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C의 채권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2020. 12. 20.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전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, 이에 대하여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.

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제3채무자들을 상대로 2011. 2. 18.자, 2011. 5. 27.자 및 2017. 9. 8.자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일 무렵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. 이로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,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 무자력 상태의 C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한다.

갑 제1, 3호증, 을 제1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C가 2003년경부터 2016. 12. 26.경까지 계속하여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, 이 사건 판결의 사건은 위 수감기간 중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앞서 본 원고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C의 수감기간 또는 상속재산협의분할 이후 각 이루어진 사실,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C의 주소가 이 사건 판결에 기재된 C의 최종주소(서울 은평구 G)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한편 상속재산협의분할 이전 C가 이 사건 판결이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. 여기에 C가 수감기간 이루어진 민사소송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확인한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,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C 스스로도 자신의 채무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, 그 당시 피고가 C에게 수감되기 이전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.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행위가 그의 일반

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.

라. 소 결

따라서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영아

부동산의 표시

1. 경기도 포천시
대 512 ㎡

2. 경기도 포천시
(도로명주소)

경기도 포천시
☐ 동 목조 양철 및
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
13.95 ㎡ (양철지붕)
68.00 ㎡ (스레이트지붕)

끝.

